노인장기요양 및 치매예방 설명회

㈜다비다노인복지센터

042)535-8977

010-4378-8977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 받은 경우, 장기 요양기관으로 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자금(재원)은 무엇인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6.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등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0%
시설급여: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0%

수급자로 판정 받으려면?

▶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신 가능)

단)신청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신청대행기관:다비다 노인요양 복지센터)

* **신청자격** : 65세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팩스,인터넷 등
* **제출서류**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table>
<tr><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h>인지지원등급</th></tr>
<tr><td colspan="2">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td><td colspan="3" rowspan="2">재가급여</td><td rowspan="2">주야간 보호급여</td></tr>
<tr><td colspan="2">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td></tr>
<tr><td colspan="6">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td></tr>
<tr><td colspan="6">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td></tr>
</table>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8일 이내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종일방문요양: 1~2등급치매만 가능함)*

방문간호 이용 시 알아두세요!!

방문 간호란 무엇인가요?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가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상담,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의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예방관리등을 위한 방문간호 이용 가능합니다.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치매수급자 : 등급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2회) 본인부담금없이 이용가능합니다.(※치매교육 이수한 간호사,간호조무사)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방문간호지시서발급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는다.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장기요양관현황 or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기관확인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방문간호 기관확인 후 계약